

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(서상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발 의 자: 서상열 의원(1명)
찬 성 자: 고광민, 김길영, 남창진,
문성호, 박상혁, 박환희,
유만희, 유정인, 장태용,
채수지, 허 · 훈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동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개선, 공공일자리 창출,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·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제정되었음.
- 1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평가와 분석이 없어 마을관리소 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근거가 부족한 점, 주차장 등 주민생활시설의 경우 자치구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바 자치구 사무기능에 대해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마을관리소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이를 운영함으로써 시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,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(서울가꿈주택사업, 골목길재생사업 등)과도 추진목적이 유사하여 예산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후 마을관리소 사업이 종료되었음.
- 따라서 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